



한국 다국적 의약 산업 협회

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-7 번지 6 층 (우) 135-936 전화:(02) 456-8553 전송:(02) 456-8320

문서번호 CDC11-005

시행일자 2011년 7월 11일

수신: 대한의사협회

제목: 대의협 제 610-1935 호에 대한 회신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귀 협회 공문 대의협 제 610-1935 호 관련입니다.
3. 2011년 7월 5일 개최된 제 2-7 차 규약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시군구의사회가 다수의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제약사로부터 직접 부스비 및 광고비를 수령해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시군구의사회가 단순한 보건의료전문가의 모임이 아닌 의사회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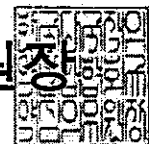
○ 부스비 및 광고비를 수령하는 통장 계좌가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이 아닌 시군구의사회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을 것

○ 지원 받은 부스비 및 광고비의 출납상황을 관련 서류와 함께 기록 보관할 것

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군구의사회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사회 또는 의사협회를 통하여 제약사의 부스비 및 광고비를 수령하는 것이 적절한 한 것으로 보입니다.

4. 관련하여 확인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규약심의위원





“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”

대한의사협회

KOREAN MEDICAL ASSOCIATION

☎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794-2474/전송(02)793-9190
인사담당 의사국장 오윤수 [100] 법제팀장 이성민 [120] 대리 김상구 [121]/E-mail: kimgu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610-1935호

시행일자 2011. 6. 7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학술대회 부스비용 지원 관련 질의의 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귀 회 공정경쟁규약은 의료인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과 학술 연구와 임상 발전에 위한 의료인 지원을 엄격히 분리하고, 후자에 대해서는 학술대회 개최지원 및 전시·광고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의약학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
3. 의료인의 자발적인 활동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학술·연구단체 성립이 헌법상 보장되고, 이러한 소규모 연구모임을 통해 전문적이며 다양한 분야의 의료기술 및 의학발전이 이뤄져 왔음을 고려할 때 동 단체들이 그 동안의 학술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발표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개최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스스로 학술대회의 주체가 되어 외부의 간섭없이 활발한 학회활동이 이뤄지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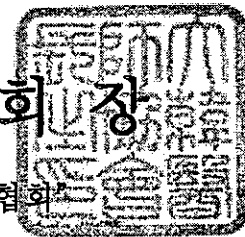
4. 귀 회에 기 통보(2011.2.25, 대의협 제610-9903호)하여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협회의 산하단체인 각 시군구의사회도 상기와 같은 취지에서 자율적으로 학술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업계로부터 정당한 재정적 지원의 수령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

5. 특히 귀 회 공정경쟁규약상 별도의 지원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후적 신고사항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시·광고(규약 제15조)는 학술대회 주최자인

각 시군구의사회가 제약계 및 의료기업계에 대해 학술대회 개최장소 일부를 임대하여 관련 의료인을 대상으로 전시부스를 설치하여 홍보하도록 하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동 시군구의사회는 전시부스 및 광고비용을 모 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령, 보유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함이 소위 리베이트 쌍벌죄에 관한 의료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.

6.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귀 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각 시군구의사회가 제약업체로부터 학술대회 전시부스 비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도 모단체인 서울시의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는 입장임을 확인하고 우리 협회에 알려왔는 바, 이에 우리 협회는 각 시군구의사회가 전시·광고 비용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직접 받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귀 회의 명확한 근거(규약 또는 의료법 등)를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”

수신처 : 한국제약협회장,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